
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8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박용갑 · 이광희
이상식 · 최혁진 · 양부남
김한규 · 염태영 · 손명수
김우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·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, 시·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.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·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 신설).
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국가 등의 지원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7조(국가 등의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국가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